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27일, 남인순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남인순의원)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안경사의 정의규정에 굴절검사 시행 등 실제 안경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에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를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 제3조에 따라 시행령에서 굴절검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나, 법률에서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주된 업무’로 규정할 경우 현행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지 않는 ‘약제를 사용하는 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타각적 검사’ 등 모든 굴절검사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은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안경사의 정의규정 중 주된 업무에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관리,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 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불명확한 “관리” 부분을 삭제하고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굴절 검사로 한정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10.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안경사의 정의규정 중 주된 업무에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관리,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불명확한 “관리” 부분을 삭제하고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굴절검사로 한정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의2(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정의) ----- ----- ----- ---.	제1조의2(정의)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 음)	1.·2. (현행과 같 음)
3. “안경사”란 <u>안경</u> <u>(시력보정용에 한</u> <u>정한다. 이하 같</u> <u>다)의 조제 및 판</u> <u>매와 콘택트렌즈</u> <u>(시력보정용이 아</u> <u>닌 경우를 포함한</u> <u>다. 이하 같다)의</u> <u>판매를 주된 업무</u> <u>로 하는 사람을</u> <u>말한다.</u>	3. “안경사”란 <u>안경</u> <u>(시력보정용에 한</u> <u>정한다. 이하 같</u> <u>다)의 조제·판매</u> <u>및 관리와 콘택트</u> <u>렌즈(시력보정용</u> <u>이 아닌 경우를</u> <u>포함한다. 이하</u> <u>같다)의 판매 및</u> <u>관리, 안경·콘택</u> <u>트렌즈의 도수를</u> <u>조정하기 위한 굴</u> <u>절검사의 시행 등</u> <u>을 주된 업무로</u> <u>하는 사람을 말한</u> <u>다.</u>	3. “안경사”란 <u>안경</u> <u>(시력보정용에 한</u> <u>정한다. 이하 같</u> <u>다)의 조제 및 판</u> <u>매와 콘택트렌즈</u> <u>(시력보정용이 아</u> <u>닌 경우를 포함한</u> <u>다. 이하 같다)의</u> <u>판매, 안경·콘택</u> <u>트렌즈의 도수를</u> <u>조정하기 위한 약</u> <u>제를 사용하지 아</u> <u>니하는 굴절검사</u> <u>의 시행을 주된</u> <u>업무로 하는 사람</u> <u>을 말한다.</u>

법률 제 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판매를”을 “판매,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절검사의 시행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u>판매</u>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조의2(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u>판매, 안경 ·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절검사의 시행</u>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